

'26년 제1차 경찰공무원(공채) 채용 필기시험 안내 (전북청)

□ 시험 일시: 3. 14.(토) 10:00~11:40 (100분)

※ 시험교실 입실시간: 07:30 ~ 09:20

□ 응시분야 및 응시번호별 시험 장소

분 야	응시번호	인 원	장 소	비 고
공채	10001~10750	750명	전주 기전 중학교	제1시험장
	10751~11392	642명	전주 공업 고등학교	제2시험장

- 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도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불가**

□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사인펜, 수정테이프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갱신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형·구형 불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불가. 다만,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 소지한 경우, 갱신기간 경과한 운전면허증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모바일 신분증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되므로 인정 불가
- 응시표는 응시자가 직접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지참, 분실한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재 출력 후 시험응시
- 품질이 불량인 컴퓨터용사인펜은 채점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시험시간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

□ 시험장 안내

○ 제1시험장: 전주기전중학교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33)

– 응시대상: 10001 ~ 1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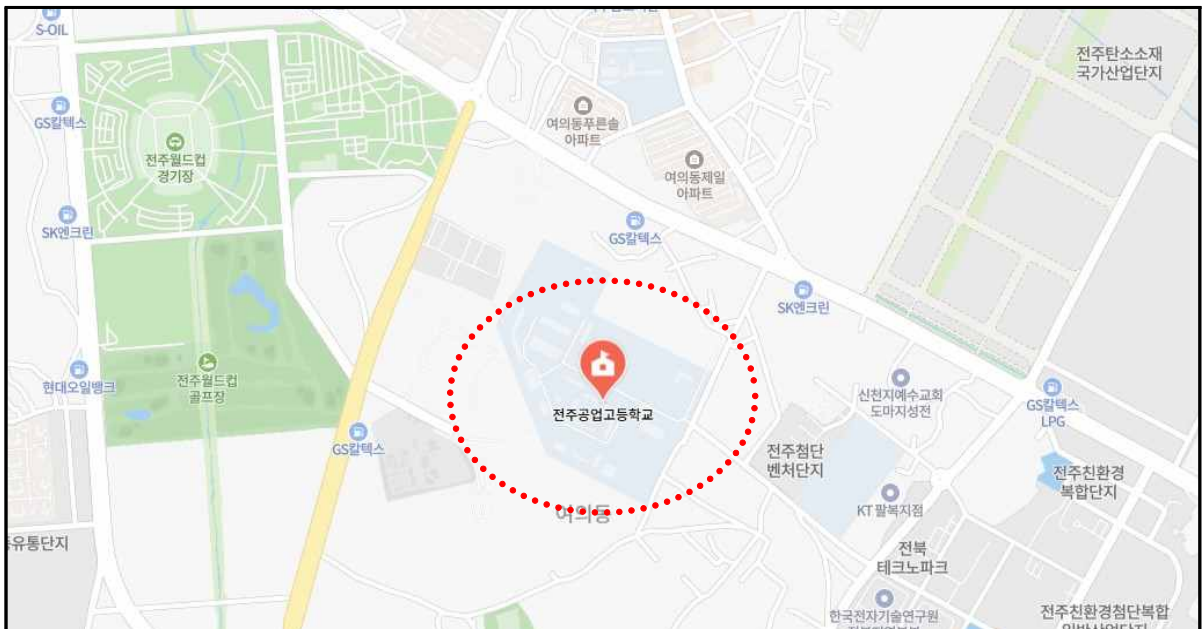
– 시험장 약도



○ 제2시험장: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01)

– 응시대상: 10751 ~ 11392

– 시험장 약도



□ 응시자 유의사항

-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자제(시험장 차량출입 통제)
 - 시험장 인근 주택·상가 등 불법 주·정차 위반시 단속·견인 조치
- (학교내 금연) 시험장 내 모든 구역(운동장 포함)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학교 내 금연(과태료 10만원)
- (음식물 반입등 금지) 시험실 내 **음식물 반입금지**, 가족·지인등 응시자 외 **학교내 출입금지** 및 시험장 주변 **응원행사 전면 금지**
- 붙임1 ~ 4 안내문 반드시 필독

□ **이의제기:** 3. 14.(토) 12:00 ~ 15.(일) 12:00, 원서접수사이트

□ **합격발표:** 3. 20.(금) 17:00,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 **기타문의:**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계

(☎ 063-280-8325)

붙임 1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3] 참조

나.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합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①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②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③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소지·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제출**
- ▶ **시험 전에** 가방 등에 넣은 뒤 시험실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 함
- ▶ **시험 시작 후** 사진 제출하거나, 소지 확인 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제3호(통신·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 처리**

②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마스크, 돋보기, 귀마개(이어플러그)

- ▶ 돋보기·귀마개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휴대 가능
- ▶ 귀마개는 그 크기가 귓구멍을 막기에 적당한 것만 허용하고, 크기가 과도한 경우는 불허하며, 형태는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함
- ▶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③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시험장 반입은 허용하나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문제집·기본서·요약집·노트·법전·연습장 등 수험자료 일체, 모자, 방석, 무릎담요, 커블 체어, **아날로그 탁상시계***

* 알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시험 방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입 금지

- ▶ **시험 시작 전** 가방 등에 넣은 뒤 시험실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 함
- ▶ **시험 시작 후** 사진 제출하거나, 소지 확인 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제4호(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로 **부정행위 처리**

※ 위 물품 외 기타 소지품은 감독관 판단하에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크기가 작은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소지·휴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① 전원 OFF → ② 개인 가방에 집어 넣기 → ③ 가방을 복도 밖에 적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을 OFF 하지 않아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아.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장 건물 현관 출입구가 폐쇄되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용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원칙과 절차

<사용 원칙>

1. 사용 시간: 10:30 ~ 11:20(시험시작 3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 횟수: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1:2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 카.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시험 중 퇴실 시 조치

- 가. 응시자는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단이탈한 응시자는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당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 나. 화장실을 허용된 사용 시간대가 아님에도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다.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실을 퇴실하였더라도 긴급 병원후송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험장(학교 등) 밖으로 퇴거할 수 없으며, 외부 연락 차단된 상태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붙임 2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득점은 채점 기계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아래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답란의 테두리선 밖을 넘어 주변 답란 가까이 까지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색깔 및 표기된 형태·크기와 상관 없이 답안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 받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중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붙임 3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09:40:01부터)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 중 시험실에서 무단퇴실한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

목 차

- 일반공채(101경비단) -

【 헌 법 】 ----- 00

【 형 사 법 】 ----- 00

【 경 찰 학 】 ----- 0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컴퓨터용 시인·본인 사용

분야	시도	응시 번호	생년월일 (연월일순 기재)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 시험 감독관명**
(성명, 성씨, 직책, 직급, 직위 기재)

필적 감정용 기재란
(예시) 위 응시지와 동일함.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원	번	형	시	경	찰	학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9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0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9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0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